

수신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예고 (제54호 서울석장)

1.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결과보고(2019-제3차 회의) (역사문화재과-13817, '19.7.24.)호 및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-4495호(2019.11.27.)과 관련입니다.
2. 상기 위원회('19. 7. 18.)에서 “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인정할 가치가 있다”고 심의된 종목에 대해 문화재청의 의견조회(11. 27)를 완료하고, 「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
  - 예고기간 : 2019. 12. 12.(목) ~ 1. 10.(금) - **공고일로부터 30일**
  - 예고내용 :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예고

무형문화재 종별	종목 명칭
기능(공예, 건축, 미술 그밖의 전통기술) - 개인	서울석장 (세부종목 : 석구조장, 석조각장)

※ 행정 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대상(법령상 실시 규정이 있는 경우)

- 붙임 1. 예고문(안) 1부.
-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. 끝.

주무관

신영문

역사문화재정책팀 김지혜

역사문화재과장

정영준

문화본부장

12/04  
유연식

협조자

시행 역사문화재과-22395 ( ) 접수 ( )

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/ 1동 4층

전화 02-2133-2616 / 전송 02-2133-1062 / youngmoons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

## 〈서울석장〉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

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4항 및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〈서울석장〉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2월 12일

서울특별시장

1. 예고일 : 시보공고일

2. 예고내용 : 〈서울석장〉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

- 서울 지역은 한반도에서 문명과 문화의 탄생지이자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음.
- 조선의 수도로서 경공장의 석조기술은 고유성과 대표성을 지니며, 한양의 석조문화는 한국의 석조기술 및 조형적 미의식을 대표하는 위치임.
- 한양 도읍을 기점으로 축성 및 도성의 석물제작이 필수적이었고, 석장의 기술도 더불어 발전되어 지방 및 다른 나라의 석조문화와 비교되는 창의성 및 다양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.
-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장들의 숙련도와 기술적 완성도는 매우 높으며 전통 기술의 사용과 전통의 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- 현장에서 일하는 석장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고령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는 장인들 역시 고연령임.
-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석장 전통이 원활하게 지속되기에는 전승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
- 이에 서울 지역의 문화가 먼 미래 한국의 전통문화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토대를 구축하고 대표성을 갖도록 〈서울석장〉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4호로 지정하고 세부분야로 석구조장과 석조각장을 나누고자 함.

3. 예고기간 : 공고일 부터 30일

#### 4. 예고사유

서울의 고유한 석공기술을 의미하는 <서울석장>종목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세부종목으로 석구조장과 석조각장을 두기 위해 사전에 의견을 조회하고자함.

#### 5. 의견제출 : 방문제출, 팩스, 또는 우편 제출(공고일부터 30일 이내)

① 전화 : (02)2133-2616(신영문 주무관) ② 팩스 : (02)768-8873

③ 우편 :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,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(04515). 끝.

##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

1. 고시·공고 명칭 :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예고

2. 고시·공고 근거법령 :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4항

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.

3.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

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를 실시하도록 규정

4.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(해당 칸에 ■ 표시)

유형	생략사유	해당여부
A	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, 열람, 공청회, 토론회, 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(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)	■
B	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근단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간급을 요하는 경우 (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)	<input type="checkbox"/>
C	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(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)	<input type="checkbox"/>
D	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(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, 제4호)	<input type="checkbox"/>

5. 작성자 : 신영문(2133-2616)